의안번호	제 28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5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항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 종전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을 도서관위원회로 변경
(안 제3장 및 제9조)

○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1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충청북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해소에 노력 하고”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로 한다.

제4조 중 “대표도서관은 법 제22조”를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로, “충청북도의”를 “도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25조”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설치한다”를 “설립·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를 “제1항”으로, “경우,「도서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를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6조”를 “법 제28조”로,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충청북도 내 도서관”을 “도내 도서관의”로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를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자·출연 법인”을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를 “국가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설치)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중 “충청북도 도서관정책”을 “도서관정책업무”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의”를 “공무원이 아닌”으로, “범위 안에서「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1항”을 “법 제2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충청북도의 도서관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1.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2.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충청북도의 책무) 충청북도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
제4조(대표도서관의 책무) 대표도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도서관 시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4조(대표도서관의 책무)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도의 ----------.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 도지사 ----------설립·운영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운영되지 않는 경우, 「도서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내----------.

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 ---------- 법 제27조----------.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소관 업무) ---------- 지도·감독---------.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1. 법 제26조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3. 법 제28조---------- 도서관자료-------
4. 그 밖에 충청북도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도내 도서관의 ----------
제7조(자료의 제출) 법 제26조에 따라 시·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법 제28조----------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 및 시·군의 출자·출연 법인	3. ---------- 출자·출연 기관

4.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4. ---------- ---------- 국가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제3장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3장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
제9조(설치) 법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는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설치)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충청북도 도서관정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간사) ---------- ---------- -- 도서관정책업무 ---------- ----------.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 ---------- ---- 범위에서 ---------- ---------- ----------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관련법령 발췌

□ 도서관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 · 부지사(해당 시 · 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 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 · 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 설립 ·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 · 시설 · 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 시행
2. 시 ·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 · 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 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22. 12. 8.)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김 은 영